

광주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1가단500046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2. 7. 22 선고 2021나63234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1가단500046 판결

### 전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환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운오

변론종결 2021. 6. 23.

판결선고 2021. 7. 21.

###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2019. 12. 7.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약정서에 기재된 물품대금계약을 31,853,96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1,853,96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2019. 12. 7.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약정서에 기재된 물품대금계약을 31,923,26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923,26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20차전104494호로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2015. 3.부터 물품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위 법원은 2020. 3. 17.경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27,796,44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 피고는 2019. 12. 17.경 다음과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D 소유의 광주 북구 E 및 F 소재 대지 건물에 대하여 1억 원을 지급받고 동시이행 관계로 주식회사 C는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 단, 위 1억 원은 광주 북구 F 소재 창고에 대하여 1억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24개월간 전세권설정하기로 한다. 또한 광주 북구 E 소재 주택에 대하여는 약정일로부터 24개월간 피고가 D 또는 D이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

로 임대한다.

2. 주식회사 C는 광주 북구 G 소재 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 내의 시설에 대하여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며, 본 전대차계약으로 인한 법적인 책임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가. 주식회사 C의 마트 내 공산품 및 생식품코너 시설에 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마트 내의 물품대금으로 2억 원을 주식회사 C 또는 주식회사 C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지급 조건은 본 약정일에 1.5억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주식회사 C 마트 내의 카드 정산과 동시에 2019. 12. 31.까지 지급하며, D은 잔금정산과 동시에 위 1.항 소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며, 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또한 전대차 기간이 종료 후에도 위 물품대금에 대하여 피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식회사 C 또는 D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기타사항 : 주식회사 C의 임대보증금은 피고에게 양도하며, 피고는 전대차 임대기간 종료 후 전대차 코너보증금을 지급한다. 단, 피고가 주식회사 C의 임대인에게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산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보증금을 반환한다.

다. 주식회사 C의 소극 재산은 아래와 같고, 적극 재산으로는 이 사건 마트에 진열된 물품 및 시설, 이 사건 마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이 있다.

|                  | 순번      | 채권자        | 가액             |
|------------------|---------|------------|----------------|
| 소<br>극<br>재<br>산 | 1       | 신용보증기금     | 금 297,000,000원 |
|                  | 2       | H          | 금 100,000,000원 |
|                  | 3       | 신용보증재단     | 금 20,178,591원  |
|                  | 4       | I          | 금 17,189,620원  |
|                  | 5       | J          | 금 11,789,902원  |
|                  | 6       | 주식회사 K     | 금 7,097,865원   |
|                  | 7       | 주식회사 L     | 금 4,946,389원   |
|                  | 8       | 주식회사 M     | 금 4,795,844원   |
|                  | 9       | 원고         | 금 30,460,570원  |
|                  | 10      | N은행        | 금 21,000,000원  |
|                  | 11      | O은행        | 금 338,000,000원 |
|                  | 12      | P은행        | 금 205,000,000원 |
|                  | 13      | Q          | 금 26,000,000원  |
|                  | 14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금 100,000,000원 |
|                  | 소극재산 소계 |            | 1,183,458,781원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거래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이미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또한 사실상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주식회사 C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약정으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마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이 사건 마트에 진열된 물품을 피고에게 양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회사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마트에 진열된 물품을 양도한 계약은 주식회사 C의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주식회사 C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은 광주 북구 E 및 F 부동산 양도 약정(이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약정’이라 한다) 및 이 사건 마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에 따른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마트에 진열된 물품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양도계약’이라 한다)으로 이루어진 일체의 계약으로서 이 사건 물품양도계약만을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물품양도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약정 및 이 사건 전대차계약과 동시에 체결되었을 뿐 위 각 약정과 분리하여 성립될 수 없는 종속적인 계약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물품양도계약은 이 사건 마트에 진열된 물품의 가액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체결된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마트의 전차인들에 대한 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도 이 사건 마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지 못하여 결국 이 사건 약정이 주식회사 C의 재산을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으므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마트에 진열된 물품의 가액을 적정하게 평가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C가 이 사건 약정 중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물품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물품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주식회사 C의 재정 상태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약정 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오히려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남편 R은 D이 운영하는 S마트에 투자를 하는 등 피고와 D은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인 점, 피고는 2019. 8. 28.경 D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광주 북구 E 및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신청이 들어오면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약정을 체결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무들을 모두 인수하되 잔금 1억 원을 D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물품양도계약도 함께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D 및 주식회사 C의 재산 상태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목적물 자체의 반환으로 해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으로 해야 한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법칙이나 거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이 사건 물품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그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주식회사 C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마트에 진열된 물품이 거래처에 반품되거나 판매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물품양도계약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이 사건 물품양도계약 목적물인 물품의 가액과 원고의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가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가액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물품양도계약에서 정한 물품가액이 2억 원인 반면, 원고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6. 23.까지의 채권액은 31,853,968원(= 원금 27,796,448원 및 이에 대한 2020. 4. 6.부터 2021. 6. 23.까지의 이자 4,057,520원)이므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은 31,853,968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원고는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제기한 지급명령신청의 비용 69,300원 상당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비용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물품양도계약을 31,853,96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31,853,96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혜원

<별지>

물품대금계약

피고  와 주식회사  사이에 광주 북구  소재의   
마트 내 주식회사  의 소유인 공산품 및 생산품코너 시설에 대하여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가 주식회사  에  마트 내의 물품대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